

반려동물 서비스의 표준·인증 마련을 위한 해외 표준·인증 관련 법규정 현황 조사 연구

한남기*, 서영희**, 김도형**, 박노근****, 김원****, 박기연*****
*주식회사 씨앤엠, **서우, ***키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KOTITI시험연구원
e-mail:jusddina@naver.com

Investigation of Overseas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Standardizing Pet Services

Young-Hee Seo*, Nam-KI Han**, Do-Hyeong Kim***, No-Geun Park****,
Wan Kim*****, Ki-Yeon Park*****
*C&M Co., Ltd, **Seowoo, ***Kiel Institut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요 약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의 법적 규제와 민간 인증 현황을 비교하였다. 미국은 주별 규제가 중심이며 민간 인증이 활발하다. 일본은 등록제와 종사자 자격 요건을 엄격히 관리한다. 중국은 방역 중심의 허가제를 운영하며 민간자격 제도 도입을 확대 중이다. 독일은 엄격한 허가제와 전문성 인증을 병행한다. 한국은 영업 등록제만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자격 규정은 미흡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종사자 자격제, 민간 인증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법적 기준과 민간 전문성 인증이 균형을 이루어야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의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1. 서론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함께 미용, 위탁관리(펫시터·호텔), 장묘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과 동물복지 수준은 사업자마다 상이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 및 인증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법적 규제와 민간 인증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국내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2-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 법·제도 및 인증제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표준 마련과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관련 법규정(등록제·허가제 운영 여부, 시설기준 등)과 민간 주도의 인증제도를 조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2-2.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및 대한민국의 공식 법령 자료와 정책 보고서를 수집·분석하였다. 각국 정부 부처의 법령, 시행규칙, 지침과 관련 업계 협회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과 관련 고시 내용을 참고하였다. 해외 사례는 문헌조사와 함께 제공된 선행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각국의 반려동물 서비스 영업 허가/등록 제도, 시설 및 운영 기준, 종사자 자격 요건, 그리고 민간의 자율인증 제도 등이다.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현황을 기술하고 비교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3. 연구결과

3-1. 미국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 모두에서 반려동물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 허가 측면에서, 연방 차원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은 상업적 동물 번식·판매업자를 규제하며, 번식용 성숙 암컷이 4마리 이상인 규모로 강아지를 판매하는 업자는 USDA(미국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사육시설 요건과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

으나, 그 범위는 주로 도매업자에 국한된다. 소매 단계의 소규모 업자나 애견미용, 위탁관리 업소 등에 대해서는 연방법 차원의 면허제는 없으며, 주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규율한다. 일부 주에서는 펫숍에서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거나(예: 캘리포니아주) 강력한 펫샵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뉴욕시의 경우 애견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하여 운영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펫스마트(PetSmart) 매장에서 발생한 반려견 사고를 계기로 ‘비주의 법’(Bijou’s Law)이라 불리는 애견미용사 자격 인증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어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시설 기준과 운영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위탁 시설(켄넬)에 대한 위생, 수용두수, 공간 크기 등의 조례를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방보다는 주로컬 차원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학대 방지 법규나 일반 사업장 위생규정으로 제재한다. 다만 펫 장모서비스의 경우 몇몇 주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여 펫 사체처리 시설의 허가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예: 일리노이주의 「반려동물 화장법」 등).

민간 인증 제도는 미국에서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정부 공인의 자격은 없지만 업계의 협회와 민간기관을 통해 자율적인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애견미용 분야에는 NDGAA(전미 애견미용협회)와 IPG(국제전문애견미용협회) 등의 단체가 미용사 자격인증을 부여하고, 표준화된 그루밍 절차와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반려동물 위탁관리(보딩) 분야에서는 과거 ABKA(미국 애원동물위탁협회)를 거쳐 현재 IBPSA(국제 반려동물 보딩 & 서비스협회) 등이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PACCC (Professional Animal Care Certification Council)에서 펫시터·펫호텔 종사자에 대한 전문 자격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펫 장례 분야에선 IAOPCC(국제반려동물공동묘지협회)* 화장시설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PLPA(반려동물상실전문가협회) 등이 종사자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등 민간 주도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3-2. 일본

일본은 2006년 개정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애호관리법)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애원동물 판매업, 보관업(펫호텔 등), 대여업, 훈련업, 전시업 등 동물취급업(第一種動物取扱業)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마다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 동물취급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의사 면허 소지, 지정된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정부가 인정한 양성기관에서의 소정 교육 이수 등 일

정 요건을 만족해야 책임자로서 등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업자가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동물취급업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법령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성의 「동물 애호 관리법 시행규칙」과 지침에서는 사육시설의 구조·면적, 동물의 취급 방식, 위생관리, 급식·운동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2020년 법 개정으로 특히 번식업자의 경우 번식 빈도 제한(예: 개의 출산은 평생 6회 이내)과 사육환경 개선 등의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지자체의 감독 하에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일본에는 동물장묘업에 대한 전국 단위의 법률은 없으나, 「묘묘묘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에 대한 조례로서 허가제를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민간 인증 측면에서, 일본에는 다양한 민간단체 및 협회가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견미용 분야에서는 JKC(ジャパンケネルクラブ)와 일본애견미용협회 등이 민간 자격시험을 통해 트리머(미용사) 인증을 발급하며, 애견훈련 분야에서는 일본애견훈련사협회(JPDT) 등이 훈련사 자격을 운영한다. 이들 자격은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업계에서 전문성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펫시터 자격(일본펫시터협회 주관)이나 펫장례지도사 자격(일본애원동물장례협회 주관)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인증도 도입되어, 소비자가 인증 취득업자를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즉, 일본은 정부의 엄격한 등록제 아래 민간 자격제가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3-3. 중국

중국은 반려동물 관련 통합법은 없지만, 여러 법령을 통해 영업 허가 및 위생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에 따라 동물 사육·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부 또는 지방 농업농촌국 산하 방역당국으로부터 동물방역 조건 합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해당 영업시설이 법정 동물위생 및 방역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동물 관련 영업활동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발급을 위해 사업자는 사육장 위치, 시설 구조, 소독·격리 설비, 종사자 방역지식 등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동물방역법 제24조·제25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조건 외에도, 일부 도시(예: 베이징, 상하이)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제를 시행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환경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시설 기준은 주로 위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다. 예컨대 동물병원이나 애원동물 판매점은 격리공간 확보, 환기 및 소독시설 구비 등이 요구되며, 애견미용업소도 미용 중 탈출 방지시설,

위생소독 준수 등의 지침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권고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동물복지 규정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며, 법 집행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민간 인증 측면에서 중국은 최근 들어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공인자격은 없었으나, 2021년 중국직업기능훈련기관 등이 애완동물 미용사, 훈련사에 대한 직업등급 표준을 제정하여 민간에서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애견협회(CKU)는 국제애견연맹(FCI)에 가입된 단체로서 애견미용사 자격시험과 경연을 개최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간 펫아카데미들을 통해 반려동물관리사, 펫영양사 등의 자격 수료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업계에서 종사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직원 채용 시 참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향후 반려동물 서비스 표준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민간자격의 체계화를 검토 중이다.

3-4. 독일

독일은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로,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도 엄격한 법적 틀 내에서 운영된다. 영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제11조는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취급하는 여러 업종에 대해 행정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번식업자나 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의행정청(Veterinärämte)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허가 요건으로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Sachkunde)을 입증해야 한다. 보통 관련 교육 이수나 수의사·동물간호사 자격, 또는 일정 경력 등이 지식 보유의 증빙으로 인정된다. 또한 반려동물 위탁관리업(펜션, 호텔)도 동일 조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며, 시설 책임자는 사육 및 복지에 관한 지식 증명서(Sachkundenachweis)를 갖추도록 요구된다. 독일은 영업시설 기준도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육동물 보호를 위한 규칙이 동물보호법 하위에 존재하여, 견종별 사육시설 최소 규모, 급수·운동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반려견보호령」(Tierschutz-Hundeverordnung)을 통해 사육 중인 개에게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사육시설 크기와 환경 enrichment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수용 밀도, 위생, 직원 1인당 관리동물 수 등의 세부 지침이 수의사협회(TVT) 권고 형태로 마련되어 업계의 표준으로 활용된다. 독일은 이러한 엄격한 허가 심사와 사후 지도를 통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확보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뿐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민간 인증 부문을 보면, 독일 역시 정부 차원의 공인자격은 없으나 업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인증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애완동물산업협회(ZZF)는 반려동물 관리사 및 미용사 과정(Heimtierpfleger)을 개설하여 수료자에게 인증서를

부여하고, 펫숍 판매원 교육 등 직무별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통 있는 독일 애견협회(VDH)는 자체적으로 훈련사 자격 및 브리더(번식자) 인증제를 두어, VDH 산하 클럽 회원들에게 엄격한 번식 기준과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 애견미용사 자격인 ICMG(International Certified Master Groomer) 등이 도입되어 독일 내 그루머들이 취득하고 있고, 애견훈련 분야에서도 Europäischer Hundetrainer 협회의 인증 등이 존재한다. 펫 장묘 분야의 경우, 독일은 반려동물 사체를 보전당국 허가 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인증된 협회 등이 모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은 법적 규제를 강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현행 법령상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반려견 유치원·호텔 등),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의 6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73조). 등록 요건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업의 경우 CCTV 설치, 공간구획, 이중문 설치 등 시설·설비 요건이 있고, 동물장묘업은 입지 제한(주택가 300m 이내 불가 등)과 소각로 등 장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영업 종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영업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이며 법정 의무 교육이나 자격시험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국내 민간 인증은 아직 초기 단계로, 몇몇 협회와 민간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가장 활발한 분야는 애견미용사로, 민간 자격증(예: 한국애견연맹(KKF) 주관 애견미용사 자격 등)이 여러 등급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동물훈련사(한국애견훈련협회 등), 펫 시터(펫산업협회) 등의 민간자격과 사설학원의 수료증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증은 국가공인은 아니지만, 관련 업계 취업 시 우대요건으로 활용되거나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수준의 자율인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자격의 관리 및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반려동물산업 협의체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료자를 인증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국가공인 자격제 도입 요구가 높은 반려동물 미용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축적된 인증체계를 공식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상의 각국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법적 규제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대한민국
영업 인허가	연방 차원 일부 허가제*, 주/지방별 제도 상이 ([Barred From Love	Puppies	Federal Law	ASPCA]	지자체 등록제 (5년마다 갱신)
주요 법령	동물복지법(AW A)주별 동물보호법 및 조례	동물애호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동물방역법지방 조례	동물보호법(Tie rSchG)반려견 보호령 등 하위규정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규칙
시설 기준	연방법상 최소 기준 (번식업 등)주/지방별 별도 규정	법정 세부기준 존재 (시설 구조, 면적 등)	법정 방역·위생 기준 중점	법정 세부기준 존재 (사육밀도, 설비 등)	법정 세부기준 존재 (업종별 별표 기준)
종사자 요건	연방법상 없음 (일부 지역 위생교육 요구)민간 자율교육에 의존	책임자 필수 (수의사 면허 또는 지정교육 이수 등)	법정 없음 (다만 방역지식 교육 필요)	허가 시 전문지식 증명 필수 (시험 또는 경력)	법정 없음 (일부 지자체 권고교육)

표 2.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 민간 인증 제도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대한민국
인증 주체	업계 협회 및 민간기관 (자율운영)	업계 협회 및 학교 (자율운영)	업계 협회 및 교육기관 (자율운영)	업계 협회 및 국제단체 (자율운영)	업계 협회 및 교육기관
미용사	NDGAA, IPG 등 민간자격 주 면허는 없음 (뉴욕시 등 예외)	JKC 애견미용사 자격 등 다수* 법정 의무 아님	민간 등급제 신설 (직업자격 표준안)CKU 미용사 경연	ZZF 펫미용사 과정 수료증ICMG 국제자격 도입	KKF 애견미용사 자격증 등
훈련사	CCPDT 등 민간자격 (국제자격 포함)	JPDT 등 민간자격	민간훈련사 교육 (警犬훈련 등 유사 분야 있음)	VDH 훈련사 인증 (동호회 연계)	한국애견훈련협 회 자격증
위탁/ 펫시터	PACCC 펫시터 인증IBPSA 회원사 인증	일본펫시터협회 인증	민간 펫관리사 교육 수료	IHK 반려동물관리사 (일부 주에서 교육)	펫산업협회 펫시터 자격
장묘 서비스	IAOPCC 화장시설 인증PLPA 종사자 교육	일본애완동물장 례협회 인증 (민간)	별도 인증 미흡	독일펫장례협회 가이드라인 (자율)	한국동물장례협 회 인증제 도입 논의
기타	애견카페 등 별도 인증 없음	애완동물판매관 리사 등 일부 민간자격	애완동물영양사 등 신설 추세	반려동물행동상담사 등 (수의사 추가교육)	반려동물관리사 등 민간자격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반려동물 서비스 법적 규제 체계와 민간 인증 현황을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업자 등록(허가)제와 시설기준의 법제화는 반려동물 서비스의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 수단임을 확인했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처럼 법률로 영업자에게 일정 기준을 부과하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국내에도 영업 등록제로 도입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육환경 기준 강화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

또는 교육 의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데, 일본·독일 등은 법적으로 이를 일부 반영하고 있었다. 국내도 현재는 법정 의무가 없지만, 자율교육을 제도화하거나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 중인 펫미용사, 훈련사 등의 자격제를 공신력 있게 인정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에서 민간협회가 주도적으로 인증체계를 발전시킨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민간 인증을 지원·승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 마련, 시험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우수한 민간자격을 선정하고, 향후 이를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업계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협회가 회원사 대상 교육, 인증,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자율적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내 관련 협회들도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 서비스 매뉴얼 보급,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 확립과 함께 민간의 전문성 인증체계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 법과 제도가 최소 기준을 정하고, 민간 인증이 실제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때, 비로소 산업 전반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계의 자율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 [2]일본 환경성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3]중국 「动物防疫法」 등 공식 법령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국가표준기술력향상(과제번호: RS-2024-00467005)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